

1719년 통신사행과 국서*

임영현**

| 목 차 |

- I. 서론
- II. 1719년 통신사의 파견 과정
- III. 1719년 통신사행의 국서
- IV.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요시무네[吉宗]가 관백의 지위를 세습한 것을 慶賀하기 위하여 파견된 1719년 통신사행의 파견 과정, 그리고 사행을 통하여 교환한 조선과 일본의 국서에 대한 연구이다.

1719년 사행을 위한 조선과 일본의 교섭 과정, 조선에서 이루어진 준비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국서·별폭의 양식·제도를

* 본고는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것이지만 논문집이 발간되기 전 박사학위논문이 완성되었다. 본고의 몇몇 부분은 박사학위 논문이 완성되기 전 이미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와 박사학위논문의 선후관계를 따진다면 당연히 박사학위논문에서 본고의 내용을 인용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본고의 교정과 발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박사학위논문의 인쇄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본고에서 필자의 학위논문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둔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 allthattruth@daum.net.

와 실재를 살펴보았다. 이전의 연구가 통신사의 일본 노정과 일본에서의 교류에 집중했다면 본고는 조선에서 이루어진 준비와 일본과의 교섭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그 결과 1719년 사행은 1682년 사행 사례로 복귀하면서도 1711년 사행 당시 새롭게 도입된 일부 사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719년 국서와 별폭은 지침서의 양식과 일치하지만, 별폭 예물의 물목과 수량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물종과 수량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국서가 개인이 작성한 문헌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국왕의 국서는 통신사가 副本을 지참하였고, 일본 관백의 회답국서는 통신사가 받은 후 미리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밝혔다.

주제어: 通信使, 己亥使行, 國書, 別幅

I. 서론

조선과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적 교린체제를 맺어왔다. 그렇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변환점을 맞이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 후 전란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이웃한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이 가운데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서는 단교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은 일본과의 단교 상황을 지속하기는 어려웠다.¹⁾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조선 정부는 두 차례 침략을 자행한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현지의 정세를 정탐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대마도는 조선과 본국의 중개 무역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의 취해왔으며

1)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회복 과정 중 조선의 입장과 강화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103~172쪽 참조.

로 조선과 일본의 단교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실리를 위하여 조선과 江戸를 설득하여 양국의 통교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豊臣秀吉의 사망 이후 關白의 지위에 오른 徳川家康는 외국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성립해가려는 의도를 가졌다. 이와 같이 조선-대마도-江戸의 동상이몽 속에서 조선과 일본은 중화적 교린 체제를 탈피한 적례적 교린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 최초로 파견된 국왕사의 명칭은 통신사가 아닌 회답겸쇄환사였다. 이는 일본의 요청에 의한 회답의 의미이자 전쟁 중 포로로 잡혀간 피로인들을 쇄환해 오는 목적을 지닌 사행이었다. 조선은 1617년과 1624년 두 차례 더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국교를 재개하고 사신을 파견하면서도 일본 측 사신이 한양에 입성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조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 교섭은 오로지 동래부에 설치된 倭館에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제한적인 외교 관계를 지속하던 조선과 일본은 1607년 최초의 국왕사인 회답겸쇄환사 이후 29년만인 1636년 통신사의 명분을 회복한 것이다. 이것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변화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과 일본이 탈중화적이며 독립적인 대등 외교를 수립한 것이었다.²⁾ 이후 조선에서는 9차례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마지막 통신사행인 1811년 신미사행은 일본의 요청으로 대마도에서 易地通信이 이루어졌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통신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일본 관백에 전달하고 관백의 회답국서를 받아 오는 것이었다. 통신사가 지참하고 가는 조선 국왕의 국서는 제작에서 전달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으며, 일본에서의 국서 전달 의식은 傳命儀라는 이름으로 엄수되었다. 조선과 일본은 국서와 함께 자국의 토산품을 예물로 증정하여 예를 표하였다. 이 예물의 물목이 수록된 문서를 별폭이

2) 손승철, 앞의 책, 2006, 227쪽.

라 하며 국서에는 응당 별폭이 첨부되었다. 현재까지 국서의 양식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며, 문서로서의 별폭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통신사행 가운데 1719년 사행의 준비 과정과 통신사행을 통하여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국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719년 통신사행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나 원역 구성, 또는 사행록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³⁾ 그렇지만 사행록 연구 외에는 여러 사행 가운데 1719년 사행이 포함되어 연구되었을 뿐이다. 1719년 사행만을 중심으로 그 준비과정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는 이재훈이 절목을 강정할 때 전례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⁴⁾

유재춘은 최초로 국서의 양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⁵⁾ 정성일은 국서와 서계를 통하여 조선 후기 대일외교를 살펴보았다.⁶⁾ 그리고 이훈은 조선과 일본의 교환한 외교문서의 현전 수량, 양식, 위식 등을 규명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서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서에 중점을 둔 연구는 아니었다.⁷⁾ 그런데 정성일과 이훈은 대일 외교문서로서 국서와 서계의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⁸⁾ 조선 후기 외교 지침서인 『通文館志』와 『增正交隣志』에는 국서와 서계를 별도의 항목으

3) 한태문, 「申維翰의 『海游錄』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6, 2008.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32, 2009. 이효원·하지영, 「1719년 통신사행과 일본 문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고전연구』 38, 2017.

4) 이재훈, 「기해사행(1719) 속 전례의 활용 : -대마(對馬) 종가문서(宗家文書)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25, 2019.

5) 유재춘, 「朝鮮後期 朝·日圖書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1, 1993.

6) 정성일, 「國書와 書契로 본 朝鮮後期(1600-1870) 對日外交」, 『명청사연구』 52, 2019.

7)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8) 정성일, 「朝·日間 公貿易 : 書契別幅(1614-99)의 分析」에서는 국서와 서계를 구분하였다(정성일, 「朝·日間 公貿易 : 書契別幅(1614-99)의 分析」, 『사학연구』 58-59, 1999, 831쪽).

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례서인 『春官志』, 사찬법전인 『典律通補』 등 여러 문헌에서도 국서와 서계는 별도의 문서로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서와 서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국서의 違式과 改書에 주목한 연구로 손승철, 김경태, 민덕기 등의 연구가 있다.⁹⁾ 정성일은 별폭의 개념·종류, 형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¹⁰⁾ 별폭을 국서별폭과 서계별폭으로 구분한 후 서계별폭의 용어와 수록 물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통신사행을 통하여 전달되는 서계별폭에 대한 사실과 별폭 양식의 고문서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우봉은 통신사의 교에 있어서 의례문제를 다루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국서 전달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¹¹⁾ 필자는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통하여 조선 후기 통신사행의 준비 과정과 통신사행 문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¹²⁾ 4장에서 검토한 對日 交隣文書에서는 교린문서를 국서와 서계, 그리고 私禮單 單子로 구분한 후 현전 현황과 양식·제도를 규명하였다.

조선 후기 통신사행은 1682년 사행 때 여러 규정과 절차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09년 관백의 지위를 승습한 德川家宣의 고문이었던 新井白石의 새로운 조선관과 儀禮改革에 따라 1711년 사행은 1682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8년 후에 실시된 1719년 사행은 다시 1682년 사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조선 예조의 典客司에서 편찬한 『通信使謄錄』에서 그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는 『通信使謄錄』을 중심으로 1719년 사행의 준비 과정과 절차를 검토할

9) 손승철 외, 『近世韓日外交秘史－國書改作과 韓日外交의 심층 분석』, 강원대학교출판부, 1988. 김경태, 『임진왜란 후 강화교섭기 국서문제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36, 2009. 민덕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606년 조선에 보낸 ‘국서’에 대한 위조설 검토－요네타니說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10) 정성일, 앞의 논문, 1999, 830-833쪽.

11) 하우봉, 『조선시대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12) 임영현, 『조선 후기 通信使行 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것이다. 이를 통하여 1711년 변경된 여러 절차가 1719년 사행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서와 별폭은 조선 국왕과 일본 關白이 교환한 외교문서이다. 그러므로 국서는 단순한 서신의 의미를 넘어 문서의 격식과 용어를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상징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서의 서식과 용어, 전송 의례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진행되지 않았다. 통신사 파견 양상의 변화는 국서와 별폭의 양식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에는 1719년 사행 당시 肅宗과 源宗吉이 교환한 국서와 별폭이 전하고 있다. 3장에서는 『통문관지』·『증정교린지』에 수록된 국서·별폭식과 1719년 국서·별폭의 실재를 비교·검토하고, 1711년 사행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과 일본에 전하는 여러 문헌에 국서가 수록된 경위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1719년 통신사의 파견 과정

조선 후기 통신사 파견을 위한 준비 과정은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중앙과 지방의 행이 문서, 의정 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렇지만 조선시대 등록이라는 문헌의 특성상 『통신사등록』의 기사 일자는 수록 문서·의정 내용 등이 실제 발생한 일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안을 구분하여 범주화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사건의 전말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1719년 사행에 주목한 것은 1711년 일본의 의례개혁 이후 1711년 사례가 아닌 1682년 전례로 복귀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통신사 파견에 있어서 직전 사행의 사례가 곧 규례이며 새로운 규례가 만들

13) 하우봉, 「『通信使謄錄』의 史料의 性格」, 『한국문화』 12, 1991.

어 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1719년 사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1682년 사례를 따랐는데 이를 위하여 조선과 일본은 상당한 논의를 거쳤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통신사 요청과 조선의 통신사행 준비로 구분하여 일본의 통신사 요청과 조선의 사신 파견을 둘러싼 양국의 교섭, 조선 내에서 이루어진 준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1719년 사행의 준비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1719년 사행이 1682년 사행의 사례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일본의 통신사 요청

조선 후기 통신사행은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1719년 일본이 통신사를 요청한 사유는 막부의 수장인 關白이 지위를 承襲하였으므로 사신을 파견하여 慶賀해 달라는 것이었다.¹⁴⁾ 직전 사행인 171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는 1711년 사행 이후 1713년 이에쓰구[家繼]의 관백 지위 승습을 이유로 통신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1716년 5월 1일 이에쓰구가 급사하였고 사신 파견은 중단되었다. 이에쓰구의 뒤를 이어 관백의 지위에 오른 자는 요시무네[吉宗]로 1718년 1월 통신사청래차왜가 조선에 이르자 조선은 본격적으로 통신사 파견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다.

1719년 사행이 수록된 『통신사등록』의 기록은 1716년 6월 새로운 관백이 지위를 승습하였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邊例集要』에 의하면 1716년 9월 關白身死告訃大差倭가 이르렀지만 『통신사등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관백신사고부대차왜는 봉진 1인, 시봉 1인, 반중 16

14) 조선 후기 9차례 사행 가운데 통신사 복구 이후 최초의 사행인 1636년과 다음 사행인 1643년의 사행 목적은 각각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과 관백의 生子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 도선주 1인, 격왜 70명과 서계를 가지고 왔다. 같은 달 21일 관수왜는 새로운 관백의 승습을 알리는 告慶大差倭가 대마도에서 출발할 것이며, 도주는 새 관백의 승습으로 문안을 위하여 에도로 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다.¹⁵⁾

1716년 11월 13일 고경대차왜와 함께 조선에 도착한 인원은 正官 타이라 호우나와[平方直],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중 16명, 격왜 70명 등이었다. 도주는 차왜 편에 私書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새 관백의 이름은 미나모토 요시무네[源吉宗]이며 지위를 승습하면서 요시무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서계에 요시무네의 한자인 ‘吉宗’의 避諱를 요청하였다.¹⁶⁾ 일본에서 관백의 이름자 피휘를 요청한 것은 1711년부터이다. 1711년 통신사가 에도에서 전명의를 행한 이후 국서의 피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¹⁷⁾ 1711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은 통신사 파견 이전에 새로운 관백의 이름자를 알려 피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요시무네의 승습에 따른 일본 측의 공식적인 통신사 요청은 승습 이후 햇수로 2년이 경과한 1718년 1월에 이루어졌다. 동래 부사 趙榮福이 1718년 1월 25일에 작성한 狀達¹⁸⁾에 의하면 통신사 청래대차왜 정관 타이라 토모유키[平倫之]는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6명, 격왜 70명 등과 조선에 이르렀다. 이 때 타이라 토모유키는 통신사행이 내년(1719년) 5월 부산에서 출발하여 7~8월 사이 에도에 도착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다.¹⁹⁾

동래부에서는 차왜와 원역 일행을 위하여 하선연, 상선연과 왜관에서

15) 『通信使謄錄』 丙申(1716) 十月初一日.

16) 『通信使謄錄』 丙申(1716) 十一月二十七日.

17) 『숙종실록』 권50, 37년 12월 갑신.

18) 당시 왕세자의 대리청정 시기였으므로 장계가 아닌 장달을 올려 보고하였다.

19) 『通信使謄錄』 戊戌(1718) 二月初六日.

머무를 때 별연의 총 3차례 연회를 마련하여 접대한다.²⁰⁾ 조선에서는 차왜를 접대하기 위하여 음식과 인삼·명주 등의 예물을 지급하였다. 각종 물품은 예조와 동래부에서 함께 마련하였는데, 예조에서 마련한 것은 예물이었고 접위관이 내려갈 때 동송하였다. 동래부에서는 일부 예물과 접대 음식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부에서는 정해진 인원 이외의 인원을 접대하는 것에 반색을 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으레 시봉 인원을 더 보내어 접대를 요구하였고 1719년 사행 때도 그러하였다. 고경차왜의 시봉 접대 인원은 전례에 의하면 1인이었지만 일본에서는 2인을 데려왔다. 조선에서는 1인을 줄여 접대하고자 하였고 예조에서도 시봉 1인의 예단을 마련하였다.²¹⁾ 추가로 데려온 시봉 1인에 대한 예단을 더 마련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인만을 접대하고자 하는 뜻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쟁은 청래대차왜의 접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직전 사행인 1711년의 통신사청래차왜와 조선에 도착한 인원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1682년 사행의 사례대로 반중 14명과 격왜 50명을 접대하였다. 이를 근거로 조선에서는 1718년 도착한 통신사청래차왜의 반중 16인과 격왜 70명 가운데 각각 15인과 50인만을 접대하였다.

조선 후기 통신사 파견을 위한 조선과 일본의 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일본의 요청을 대체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국서의 피휘, 또는 예조 관료 서계의 증정 대상의 증감 등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차왜가 추가로 데려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색하여 접

20) 조선후기 통신사 관련 차왜 접대에 관한 연구는 심민정, 『朝鮮後期 通信使行 관련 差倭 接待』, 『조선통신사연구』 24, 2017 ;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6, 2015 ;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참조.

21) 『通信使謄錄』 丙申(1716) 十一月二十七日.

대하지 않으려는 뜻을 관철시켰다. 이것은 동래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는 조치로 생각된다.

1719년 사행에 앞서 일본의 통신사 요청까지의 시기를 차왜의 도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본의 통신사 요청

시기	차왜
1716년 9월	관백신사고부대차왜 平眞連
1716년 11월	신관백고경대차왜 平方直
1718년 1월	통신사청래대차왜 平倫之

고경차왜와 청래차왜가 조선에 도착한 시기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백이 지위에 오른 이후 체제를 안정시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 후기 통신사 파견은 오로지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굳이 통신사 파견을 먼저 제안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일본의 공식적인 통신사 요청 이전에 도착하는 고부차왜와 고경차왜의 존재를 통하여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통신사 파견을 예비할 수 있었다.

직전 사행인 1711년 사행은 아라이 하쿠세키에 의한 외교 개혁이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관백의 죽음과 승습, 그리고 통신사를 요청하는 차왜를 파견하는 것은 1682년 사행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그리고 1719년 사행도 1711년 사행의 차왜 접대 사례대로 접대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보건대 일본의 외교 개혁은 통신사 관련 차왜의 파견과는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의 통신사행 준비

1) 통신 삼사와 사행 파견 인원

통신사 파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신 삼사를 비롯한 원역 일행을 구성하는 것이다. 통신사로 일컬어지는 정사·부사·종사관의 삼사는 국왕의 명으로 파견되어 국서 전달 의식인 傳命儀를 엄수하였다. 아울러 사행 인원을 통솔하고 일본 각지의 인사들과 시문을 주고받거나 필적을 남기는 등 문화 교류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통문관지』와 『증정교린지』의 「通信使行」 항목에는 통신사 파견의 大概를 서술한 다음 가장 먼저 통신사 원역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삼사의 선발과 원역 일행의 구성이 통신사행의 주요한 절차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신사 원역의 구성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담당하였다. 예조에서는 비변사와 논의한 후 국왕의 재가를 얻어 통신 삼사를 비롯한 원역을 구성하였고, 지방 감영에서는 선장·격군 등 선상 인원과 도훈도·樂手 등의 인원을 선발하였다.²²⁾ 그리고 지방 감영에서 선발한 인원은 상경하지 않고 사신 일행이 부산에 당도하면 합류하였다. 따라서 일본으로 도해하는 인원이 완벽하게 구성되는 시점은 중앙에서 선발된 통신사 일행이 부산에 도착한 이후가 된다. 중앙에서 선발되는 인원은 대체로 역관→삼사→군관·제술관·의원·노자 등의 순서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군관·제술관·의원·노자 등의 선발에는 통신 삼사의 의중이 크게 작용하였다.²³⁾

1719년 통신 삼사는 洪致中·黃璿·李明彦이다.²⁴⁾

22) 통신사 원역의 선발실태에 대해서는 심민정, 「조선 후기 통신사 원역의 선발실태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3, 2005 참조.

23) 임영현,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0, 171~181쪽.

24) 洪致中, 『海槎日錄』.

<표 2> 1719년 통신 삼사

職責名	假銜	성명
正使	吏曹 參議	洪致中
副使	弘文館 典翰	黃璿
從事官	弘文館 校理	李明彦

통신 삼사는 임명 당시의 직책이 아닌 가함으로 파견되었는데, 삼사의 가함은 1682년 이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²⁵⁾ 통신 삼사가 가함으로 파견된 것은 통신사를 접대하는 일본의 막부 관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조선 후기 통신사행에서 통신 삼사는 대체로 청래차왜가 도착한 이후 2개월 내에 임명을 완료하였으므로 1719년 사행의 통신 삼사도 1718년 전반기에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⁶⁾ 그리고 사행 원역의 구성에 있어서 통신 삼사 보다 역관의 차출이 먼저 이루어졌다.²⁷⁾ 통신 사행에서 역관의 임무가 사행을 위한 각종 절목의 강정과 행중의 행정 실무였기 때문에 삼사보다 먼저 선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문관지』에는 통신사행을 구성하는 원역의 직책과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사행 원역의 총 인원수는 통신 삼사를 비롯하여 총 503명이다.²⁸⁾ 그렇지만 『통신사등록』과 홍치중의 『海槎日錄』, 그리고 김흡의 『扶桑錄』에 수록된 일행의 수는 『통문관지』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25) 임영현,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0, 176~177쪽.

26) 통신 삼사로 임명된 관원이 기피하거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개차되기도 하였으므로 반드시 2개월 내에 완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임영현, 위의 박사학위논문, 2020, 175쪽).

27) 金履喬, 『辛未通信日錄』 권1 「文蹟」.

28) 『通文館志』 권5, 「交隣下」, 通信使行.

<표 3> 1719년 사행 인원

구분	『통신사등록』	『해사일록』	『부상록』
총 직책수	20	37	48
총 인원수	104	484	426

우선 『통신사등록』에는 정사 이하 당상역관 노자까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신사행에 참여한 전체 인원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제시된 인원은 관진차비 관문(關津差備關文)이라고 하는 문서에 수록된 것이다.²⁹⁾ 이 문서는 일본에 도해한 이후 일본의 關津을 지날 때 인원을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예조에서 발급하여 통신 삼사에게 지급된다. 이 문서에는 선장·격군과 같이 선상에서만 필요한 인원은 기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신사행 원역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1719년 사행 인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상 인원까지 수록한 사행록을 참고해야 한다.

홍치중의 『해사일록』과 김흡의 『부상록』에 수록되어 있는 사행원의 직책과 인원은 각각 수록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직책수와 인원수의 차이를 보인다. 홍치중의 『해사일록』은 직책명을 중심으로 군관·역관 등 주요 직책의 경우 당시의 관직·성명, 출신 지역 등의 정보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반당에서 격군까지는 총 인원수만을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인원은 474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수치이다. 『해사일록』에 수록된 인원을 삼사를 포함하여 산출하면 모두 482인이다. 그런데 역관 가운데 압물통사 吳萬昌과 權興式은 죄를 범하여 삭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2인을 더하면 도해한 총 인원수는 모두 484인이 된다. 김흡의 『부상록』에는 奴子의 인원수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전체 인원수를 파악

29) 1719년 사행의 관진차비 관문은 사행 출발 3일 전인 1719년 4월 8일에 발급되었다. 관진차비 관문에 대해서는 임영현,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0, 84~90쪽 참조.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사일록』과는 달리 정사·부사·종사관의 행중에 소속된 인원을 구분하였고, 小童·刀尺 등 말단직이나 노자의 이름도 수록하고 있다.

다음은 『해사일록』과 『부상록』에 수록된 원역의 직책과 인원수이다.

<표 4> 1719년 사행 인원 비교

김흡 『부상록』									홍치중 『해사일록』	
구분	직책	인원	구분	직책	인원	구분	직책	인원	직책	인원
제 1 선	정사	1	제 2 선	부사	1	제 3 선	종사관	1	정사	1
	정사군관	4		부사군관	4		종사군관	2	부사	1
	자제군관	3		자제군관	2		자제군관	1	종사관	1
	원사군관	1		선사군관	1		서기	1	역관	12
	제술관	1		서기	1		의원	1	제술관	1
	서기	1		의원	1		역관	1	양의	1
	양의	1		역관	1		차상통사	1	사자관	2
	역관	1		상통사	1		한학상통사	1	의원	2
	상통사	1		압물통사	2		압물통사	1	회원	1
	차상통사	1		회원	1		사자관	1	자제군관	5
	압물통사	1		기선장	1		기선장	1	군관	10
	사자관	1		복선장	1		복선장	1	금려군관	2
	기선장	1		별파진	1		마상재	1	서기	3
	복선장	1		전악	1		도훈도	1	별파진	2
	별파진	1		도훈도	1		반당	1	마상재	2
	마상재	1		반당	1		청직	1	전악	2
	전악	1		청직	1		노자	미상	이마	1
	이마	1		노자	미상		소동	4	반당	3
	도훈도	1		급창	2		소동	5	기선장	3
예단직	1			급창	2	복선장	3			
반당	1									
청직	1									
노자	미상									

향서기	1	도척	2	도척	2	소동	16
소동	6	소통사	3	소통사	3	삼사노자	6
급창	1	취수	6	취수	6	원역노자	44
도척	1	나장	6	나장	6	소통사	10
소통사	3	기선색	1	기선색	1	도훈도	3
취수	6	타공	1	타공	1	반전직	3
나장	6	순상	1	순상	1	취수	18
기선색	1	요수	1	요수	1	포수	6
타공	1	정수	1	정수	1	도척	5
순상	1	격군	56	격군	56	사공	24
요수	1	복선색	1	복선색	1	악공	6
정수	1	타공	1	타공	1	향서기	2
격군	56	순상	1	순상	1	급창	6
복선색	1	요수	1	요수	1	방자	3
타공	1	정수	1	정수	1	나장	16
순상	1	격군	34	격군	23	기수	8
요수	1					격군	250
정수	1						
격군	34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흡의 『부상록』에 수록된 인원이 홍치중의 『해사일록』에 비하여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상록』에서 생략된 노자의 인원을 『해사일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사일록』의 삼사노자와 원역노자를 합한 수는 모두 50인이다. 『부상록』의 426인에 노자 50인을 더하면 도합 476인이 되며 이 수치는 『해사일록』의 484인에 가깝다. 이들 기록에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1719년 사행 당시 도해한 인원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약 480인의 인원이 도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의 사행록에는 『통문관지』에 수록된 형명수·독수 등 일부 직책이 사행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는 형명수·독수 각 1인과 월도수에서 쟁수에 이르기까지의 60인은 1682년 사행부터 격군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2) 각종 절목의 마련과 시행 출발

조선과 일본은 통신사 파견에 앞서 양국이 준행할 절목을 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절목의 강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강정 역관이 대마도로 도해하여 강정한 후 상송하는 경우와 대마도주가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오는 경우, 그리고 동래부의 왜관에서 역관과 차왜가 강정하는 세 가지 경우이다. 1719년 사행의 절목은 절목 강정 역관이 대마도로 도해하여 절목을 강정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역관을 차출하는 사안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1718년 2월 11일 내도한 재판차왜 타이라 마사치[平眞致]는 대마도도주가 에도로 다녀온 것을 치하하는 문위역관을 겸한 통신사 절목 강정 역관으로 당상관과 당하관 각각 1원을 차출하고, 대마도주의 生子를 치하하는 당상역관 1인을 별도로 요청하였다. 즉, 문위와 강정을 겸하는 역관과 도주의 생자를 치하하는 역관을 각각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동래 부사는 장달을 상송하여 재판차왜의 요청은 전례에 어긋나는 것임을 보고하였고, 한편으로는 훈도와 별차에게 전령하여 역관 차출에 대한 사안을 다시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³⁰⁾

<표 5> 절목 강정 역관 파견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

연번	재판차왜 주장	동래 부사 주장
①	절목 강정 역관으로 당상·당하관 각 1인을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에도의 명령임	절목 강정 역관으로 당상·당하관 각 1인을 차출한 전례 없음
②	관백 생자 치하와 문위 겸하여 당상·당하관 각 1인 차출 전례 있음	절목 강정 역관으로 2인을 청하고 문위를 겸하는 것은 부당함
③	문위와 절목 강정을 겸하는 것과 문위와 생자 치하를 겸하는 것은 일의 경중이 동일함	절목 강정 역관으로 당상·당하관 2인 차출은 전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색해야 함

30) 『通信使謄錄』 戊戌(1718) 二月二十七日.

동래 부사와 재판차왜는 당상관 2인과 당하관 1인을 차출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차출의 ‘명분’에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재판차왜는 절목 강정을 명분으로 당상·당하 역관을 각각 1인 차출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반하여 조선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없고 이번에는 일본 측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전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색하고자 하였다. 예조는 경상감영으로 관문을 보내 도주 문위 역관과 절목 강정 역관으로 당상 2인과 당하 1인을 들여보내는 것을 묘당에서 확정하였으니 이에 대한 절차 및 인원 구성 등은 계유년(1693) 문위 역관의 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다.³¹⁾ 이에 따라 절목 강정 역관으로 行副司勇 韓後瑗³²⁾을 차출하였고, 문위 겸 생자 치하 역관으로는 당상역관 行副司勇 金圖南³³⁾과 당하역관 前判官 洪舜明³⁴⁾을 차출하였다.³⁵⁾ 이것은 조선이 일본의 주장을 방색하고 대마도 도주에 대한 문위와 생자 치하를 겸하는 역관을 파견한 것을 보여준다.

한후원이 대마도로 도해하여 강정한 절목은 모두 30조목이다. 추후에 미진한 조건이 있어 차왜가 다시 올린 4조목³⁶⁾까지 합하여 강정절목은 모두 34조목이 되었다. 절목의 내용은 『통신사등록』과 『변례집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 행차는 대체로 직전 사행 규정을 따르는데 1719년 사행은 전전 사행인 1682년 사행의 전례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광산 분향 정지, 儲君(관백의 아들로 若君이라고도 칭함)에게 주는 예단 및 통신사의 배례 정지 등 1711년 사행 때 새롭게 정한 절목

31) 『通信使謄錄』 戊戌(1718) 二月二十九日.

32) 한후원(韓後瑗) : 1659-?. 본관 청주(淸州), 자는 백옥(伯玉). 1678년(숙종 4) 무오 증광시 역과 3등 7위로 입격.

33) 김도남(金圖南) : 1659-?.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중우(仲羽). 1678년 무오 증광시 역과 3등 2위로 입격.

34) 홍순명(洪舜明) : 1677-?.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수경(水鏡). 1705년(숙종 31) 을유 식년시 역과 3등 8위로 입격.

35) 『通信使謄錄』 戊戌(1718) 二月二十九日.

36) 『通信使謄錄』 己亥(1719) 二月初六日.

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통신사행 절목을 마련하였다. 총 34조목의 절목을 정하여 한후원에게 지참하게 하였고 그 내용은 주로 통신사 원역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이었다. 일광산 분향 정지 등의 몇 가지 사안이 1711년 사례를 적용하여 1719년 사행에도 정지되었다. 이러한 점은 1719년 사행이 1711년 사례를 전적으로 폐기하고 1682년 사례로 복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일본은 1711년 의례개혁에서 새롭게 실시한 여러 규례를 취사선택하여 1719년 사행에 적용하였고, 조선에서는 1682년 사행 등 이전 사례를 기준으로 일본의 요청을 승낙하거나 거부하였다.

통신사 강정절목 마련 이후 조선에서 이루어진 사행 출발을 위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일자를 표기하였다.

<표 6> 통신사행 준비 일정

시기	내용
1718년 7월	27일. 응행제사 마련
10월	22일. 통신사 강정 절목 상송
1719년 1월	20일. 출발 및 승선 일자 추택 통신 삼사 차출
2월	18일. 금단절목 마련 통신사 호행차왜 출래
4월	8일. 별폭 예단 붕괴 11일. 통신사행 하직 후 출발
5월	18일. 통신사행 부산에서 승선

절목 강정 역관을 파견하여 대마도에서 절목을 강정하는 동시에 동래의 왜관에서는 조선의 역관·훈도와 일본의 관수왜·차왜 등이 통신사행을 둘러싼 절차·의례 등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교

섭과는 별개로 예조에서는 전례에 준하여 사행 인원을 조직하고, 예단·물목, 절목 등을 마련한다. 1719년 사행의 사행 원역과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1711년 신묘사행의 사례에 준하여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1718년 7월에 마련된 17조목의 應行諸事이다.³⁷⁾

조정의 논의를 거쳐 1711년 사례대로 통신사행을 준비하되 일본 측 요구가 담긴 절목이 도착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원역을 구성하고 서계나 예물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절목을 강정하러 갔던 도해역관은 1718년 10월 19일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동래에 도착하였고, 동래 부사는 10월 22일 역관의 호행 재판차왜가 가져 온 강정절목을 예조로 올려 보냈다. 마침내 통신사 원역 완비를 위한 조목이 마련된 것이다.

도해역관의 강정절목 중 일본 측에서 요구한 출발일은 4월 5일에서 15일 사이이며, 부산진에서 승선하는 일자도 5월 15일 전후였다. 1719년 1월 20일 예조에서는 觀象監에 분부하여 출발 및 승선 일자를 推擇하게 하였다.³⁸⁾ 관상감에서 통신사의 출발 일자와 승선 일자를 추택하는 것은 삼사의 선발 이후이다. 예조에서는 삼사를 선발한 이후 관상감에 삼사의 이름과 생시를 적어 보내어 일자 추택을 명령한다.³⁹⁾ 이에 따라 日官이 추택한 출발일은 4월 10일과 11일, 승선일은 5월 6일과 18일이다.⁴⁰⁾ 관상감의 출발일 추택이 이루어진 직후인 1719년 1월 29일 통신 삼사인 홍치중·황선·이명언이 世子를 請對하여 통신사 행차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사 군관의 급료와 통신사가 지나는 곳에서 설행하는 연회는 1711년 전례대로 시행하는 것과 군관이 하에게 의복 마련을 위하여 소속 아문에서 반전을 빌려 줄 것 등이 논의되었다.⁴¹⁾

37) 『通信使謄錄』 戊戌(1718) 七月二十七日.

38) 『通信使謄錄』 己亥(1719) 正月二十日.

39) 金履喬, 『辛未通信日錄』 권1, 「使臣」.

40) 『通信使謄錄』 己亥(1719) 正月二十六日.

1719년 2월 18일 예조에서는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갈 일행의 禁斷節目을 1711년 전례에 따라 마련하였다.⁴²⁾ 그리고 3월 13일 사행에 소요되는 물품을 복정한 각도의 감영에 공문을 보내 5월 초까지 동래부로 수납하도록 하였다.

조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정과 사행에 참여한 인원을 규찰하기 위한 금단절목 등은 일본 측과의 교섭이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 조선은 이와 같이 교섭이 필요 없는 사안은 주로 직전 사행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국내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통하기도 하였다.

통신사 일행을 에도까지 호송할 통신사 호행차왜는 타이라 마사나가 [平眞長]로 2월 22일 경 부산에 도착하였다. 호행차왜의 접위관으로 차출된 이는 慶尙道都事 李承源⁴³⁾이었다. 그는 鄕試를 마치고 5월 7일에 야동래로 출발한 탓에 호행차왜의 하선연은 5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사신 일행이 사용할 잡물과 달리 일본의 관백, 집정 등에 증정할 예단은 국왕이 看品하고 관원이 모여 封裹하는 것이 규례였다. 그러나 당시 대리청정 중이었던 경종은 궐에 들이지 말고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회동하여 간품하도록 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예조 판서 민진후, 통신 정사 홍치중 등은 4월 8일 이조에 모여 예단을 간품하였고, 같은 날 예조에서는 踰越關津 關文을 통신 삼사에게 발급하였다.

마침내 4월 11일 통신 삼사를 비롯한 사행 일행은 조정에 나가 하직 한 후 출발하였다. 그리고 5월 13일 부산에 도착하여 5월 18일 乘船하였다.

41) 『숙종실록』 권63, 45년 1월 임인.

42) 통신사 금단절목은 『春官志』, 『通信使瞻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이승원(李承源) : 1661-?.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효백(孝伯). 1705년(숙종 31) 을유 식년시 문과 병과 10위로 입격.

44) 『通信使瞻錄』 己亥(1719) 三月二十五日.

Ⅲ. 1719년 통신사행의 국서⁴⁵⁾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과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지칭할 때 포괄적으로 서계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 국왕이 관백에게 전하는 서신은 국서라는 명칭이 존재한다. 『통문관지』·『춘관지』 등의 문헌에서도 국서와 서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것은 국서와 서계는 엄연히 구분되는 문서의 명칭이며 그 위상에도 차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1719년 사행 당시 일본에 전달된 숙종의 국서·별폭은 현재 동경국립박물관에 원본(청구기호: B-1768-7-1~3)이 소장되어 있고, 관백이 조선으로 보낸 국서의 寫本도 또한 위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B-1768-14-1~2).⁴⁶⁾ 이 장에서는 1719년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국서를 소개하고 『증정교린지』 등에 수록된 양식과 제도를 바탕으로 1719년 국서와 별폭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국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낱장의 문서에 불과하지만 조선 국왕과 관백의 이름이 기재되고, 御寶(관백의 경우 外交印⁴⁷⁾)가 담인되므로 상당한 위엄을 지닌다. 그러므로 조선 국왕의 국서는 國書櫃에 넣고 통신사 일행이 지참하여 도해한 후 傳命

45) 이 연구에서는 양식과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은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다. 필자는 조선 후기 통신사행을 통하여 일본에 전달된 조선 국왕의 국서의 양식과 기능, 제도, 그리고 현전 현황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세하게 고찰하였다(임영현,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0, 92~120쪽).

46) 1719년 숙종의 국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추진으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17세기~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의 하나로 등재되었으며, 2017년 유네스코 등재 기념으로 당해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개되었다. 동경국립박물관 이미지 검색 사이트 <https://webarchives.tnm.jp/imgsearch/index> (검색일: 2019. 11. 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外交印이라는 용어는 古川祐貴가 徳川將軍이 외교문서에 사용한 인장을 外交印이라 한 것을 따른 것이다(古川祐貴, 『徳川將軍の外交印——朝鮮國王宛て國書・別幅から』, 『國書からむすぶ外交』, 東京大學出版會, 2019).

儀라는 국서 전달 의식을 통하여 관백에 증정되었다. 그렇다면 申維翰의 『海遊錄』과 같은 사행록과 『朝鮮人往復書簡』⁴⁸⁾과 같은 일본인이 작성한 문헌에 어떻게 수록될 수 있었을까? 개인 저작에 국서가 수록된 경위를 밝히고 국서에 첨부되는 별폭의 양식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국서

1719년 통신사행의 국서는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문헌 가운데 『동문회고』, 『해유록』,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조선인왕복서간』에도 1711년 사행 당시에 제작된 국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이 편찬한 사찬법전인 『典律通補』나 역관의 주도로 편찬된 외교 지침서인 『통문관지』, 『증정교린지』 등에 국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국서의 원문과 제도·양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통문관지』에 수록되어 있는 국서식이다.⁴⁹⁾

國書式

外面 右邊書奉書 左邊書日本國大君殿下 合衿處書朝鮮國王姓諱謹封 內式 朝鮮國王姓諱奉書 日本國大君殿下 云云 不備 年號幾年干支月日 朝鮮國王姓諱

국서식이 수록되어 있는 또 다른 문헌으로 『증정교린지』가 있는데 두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연월일의 작성 방법이다. 『통문관지』에서는 ‘年號幾年干支月日’라고 되어 있지만 『증정교린지』에는

48)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자료번호: 신해양541.

49) 세주 없이 본문만을 수록하였다(『通文館志』 권6 「交隣下」, 國書式).

‘某年月日’로 연호 부분이 생략된다. 국서에서 연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1655년 사행부터였는데⁵⁰⁾ 『증정교린지』에 이르러 연도 표기에 간지를 기재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국서식에서 피봉이라는 용어 대신 外面과 內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서에는 별도의 피봉이 없고, 국서를 접은 후 그 외면에 수 발신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어보를 답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성 방식은 서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조선 국왕의 국서는 대제학이 찬출하며, 승문원 관원이 서사하였다. 국서에 사용한 인장의 印文은 爲政以德이며, 인신과 도장집은 공조에 명하여 제작하였고 국서통은 으레 경상도에서 제작하였다.⁵¹⁾ 다음은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1719년 속종 국서를 정서한 것이다.⁵²⁾

[외면]

① 奉 書

② 朝鮮國王李 焯 謹封
[印: 爲政以德]

③ 日本國大君 殿下

[내면]

① 朝鮮國王李 焯 奉書
[印: 爲政以德]

50) 유재춘은 국서에서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대일외교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관관계가 대폭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손승철은 조선과 일본이 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책봉체제가 붕괴되어 가는 인식하고 명을 배제한 양국 간의 새로운 외교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고 보았다(유재춘, 앞의 논문, 1993, 20쪽, 손승철,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 147~154쪽).

51) 『通信使贍錄』 戊戌(1718) 七月二十七日; 『通信使贍錄』 己亥(1719) 二月十四日.

52) 속종의 국서와 후술할 관백의 회답국서의 원문 표점과 번역은 고전번역원DB의 『海遊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서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표점과 번역은 수록하지 않았다.

- ② 日本國大君 殿下
- ③ 十年之間聘問闊焉近聞
- ④ 殿下新承
- ⑤ 令緒
- ⑥ 撫寧海宇其在隣誼曷勝欣聳爰遵故常特遣使价致慶修睦禮則然
矣兩國交歡寧有既乎仍將薄儀聊表
- ⑦ 遠忱惟冀
- ⑧ 益恢
- ⑨ 前烈永綏洪福不備
- ⑩ 己亥年四月 日
- ⑪ 朝鮮國王李 焯
[印: 爲政以德]

위 국서에는 관백의 대호를 ‘大君殿下’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직전 사행인 1711년 신묘사행 국서에는 ‘國王殿下’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요청으로 고친 것인데 1719년 사행 전 일본에서는 통신사 절목을 강정할 때 국왕의 대호를 대군으로 다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다.⁵³⁾ 1711년 의례개혁 가운데 국서에 적용된 사안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대군의 대호이다.⁵⁴⁾ 그렇지만 1711년 한 차례 적용되었을 뿐이며 일본에서는 1719년에는 다시 전전 규례를 복구할 것을 제안하였다.⁵⁵⁾ 조선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하던 舊例를 복구하는 것이므로 크게 반발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 주었다.

다음은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관백 요시무네[吉宗]의 회답국서를 정서한 것이다.

53) 『通信使謄錄』 戊戌(1718) 十一月二十三日.

54) 유재춘, 앞의 논문, 1993, 19~20쪽 재인용.

55) 『通信使謄錄』 戊戌(1718) 十一月二十三日.

[외면]

- ① 敬 復
- ② 日本國源 吉宗 謹封
[印: 源]
- ③ 朝鮮國王本 殿下

[내면]

- ① 日本國源 宗吉 敬復
[印: 源]⁵⁶⁾
- ② 朝鮮國王 殿下
- ③ 三使遠來訪問丁寧憑悉
- ④ 興居住勝萬福同也方今應休祥斯施治法
- ⑤ 故遵舊典以修新慶
- ⑥ 幣物多儀那堪報酌是由兩國永好之誼而
- ⑦ 亦可識
- ⑧ 禮意彌深聊贈謝品附於信使誠之所存
- ⑨ 彼此皆然不備
- ⑩ 享保四年己亥十月 日
- ⑪ 日本國源 宗吉
[印: 源]

일본 관백의 답서는 다이가쿠노카미[大學頭] 하야시 노부아츠[林信篤]가 찬술하였다.⁵⁷⁾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국서는 관백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짓는 이에게 명령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관백의 회답국서에 사용된 인장의 인문은 ‘源’이다. 조선 후기 일본 관백이 외교인의 인문으로 이름을 사용할 경

56) 관백의 인문은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회답국서 사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관백의 인문은 古川祐貴, 『徳川將軍の外交印——朝鮮國王宛て國書・別幅から』, 『國書からむすぶ外交』, 東京大學出版會, 2019, 193쪽에서 재인용.

57) 申維翰, 『海遊錄』中, (十月) 十一日 庚戌.

우 ‘源忠直’, ‘源忠敬’과 같이 성명을 모두 사용하는데 반하여 源吉宗은 단지 姓字인 ‘源’만을 사용하였다.⁵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본과 『조선인왕복서간』에서는 관백 회답국서의 작성 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문회고』에는 10월 12일, 『해유록』에는 10월 11일이라 기재되어 있다. 『해유록』의 기록은 10월 11일에 일본국 執政이 관백의 회답 국서를 가져 왔기 때문에 11일이라는 날짜를 기입한 것으로 추정된다.⁵⁹⁾

『동문회고』의 경우에는 관백의 답서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본 측 자료에는 일자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회답국서에 일자는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 측 자료에만 일자가 기록된 것은 회답국서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는 관백의 회답국서를 받은 후 직접 회답국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통신사가 관백의 국서를 열어볼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예람하여 혹시 모를 위식과 격식에 어긋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이해된다. 통신사가 회답국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여러 사행록에 관백의 회답국서가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관백의 회답국서뿐만 아니라 조선 국왕의 국서도 사행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신 일행이 국서궐에 봉함한 국서를 꺼내어 본 것은 아니다. 1682년 사행에 참여한 홍우재의 『東槎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⁶⁰⁾

彼請國書謄本 告于使相 以精書給 而亦欲見所盛桶子 三堂着團領
奉移于床上之後 使彼跪而視之

58) 古川祐貴은 관백의 인장이 ‘源’印을 사용한 점에서 이미 아라이 하쿠세키의 ‘傳國의 御寶’ 구상이 소멸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古川祐貴, 앞의 논문, 199쪽).

59) 申維翰, 『海遊錄』中, (十月)十一日, 庚戌.

60) 洪禹載, 『東槎錄』(七月初一日).

저들이 국서 등본을 청하므로 사신에 아뢰어 정서하여 주었다. 또 (국서를) 담은 상자를 보고자 하므로 세 당상이 단령을 입고 상 위로 받들어 옮긴 후 저들에게 무릎을 꿇고 보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요청할 경우 국서를 등서하여 주었다는 것과 국서케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종종 국서의 등본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통신사는 조선 국왕의 국서 副本을 지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는 조선 국왕의 국서 등본을 지참하였고, 관백의 회답국서는 수취 후 열어 볼 수 있었다.⁶¹⁾ 그렇기 때문에 사행록과 『조선인왕복서간』과 같은 일본 측 기록에 조선과 일본의 국서가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통문관지』에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인 전명 의와 관백 국서를 받는 受回答儀에 대한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⁶²⁾ 1719년 사행에서 전명 의는 10월 1일에 행해졌다. 세 사신은 금관·옥패·조복을 갖추고 笏을 잡고 조선의 가마를 타고 궁성으로 가서 관백을 만나 의례를 갖추고 국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회답국서를 받을 때는 의장 등의 의식 없이 10월 11일 일본의 집정 源重之와 藤原忠眞가 가지고 왔다.⁶³⁾ 직전 사행인 1711년에는 국서 전달 의식과 마찬가지로 궁성으로 가서 배례를 행하고 회답국서를 받아 왔다. 이는 조선 후기 사행 중 유일한 경우이다. 1719년 사행 때의 전명 의를 신유한은 ‘임술년의 전례와 같았다’라고 하였다.⁶⁴⁾ 그러므로 1711년의 전명 의와 수회답의 사례는 한 차례 실시 후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1719

61) 임영현,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0, 105~106쪽.

62) 국서 전달 의식에 대해서는 하우봉의 「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83~86쪽 참조.

63) 申維翰, 『海遊錄』中, (十月)十一日, 庚戌.

64) 申維翰, 『海遊錄』中, (十月)一日, 庚子.

년은 국서의 작성 방식과 전달 의식은 1711년 사례를 버리고 1682년 사례를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통신사행은 대체로 직전 사행의 사례에 준하여 의례 절차와 예물·인적 구성을 갖추었다. 그렇지만 1719년 사행은 1711년 사행 당시 일본의 의례개혁으로 직전 사행이 아닌 전전 사행인 1682년 사행의 전례를 회복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2. 별폭

조선 국왕의 국서와 함께 증정하는 예단의 물목을 수록한 문서인 별폭은 국서에 반드시 첨부되었다. 관백의 아들이나 퇴휴한 관백, 즉 약군과 구관백에게 국서 없이 별폭을 증정한 경우가 있다.⁶⁵⁾ 『통문관지』에는 별폭 양식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증정교린지』에 이르러 별폭도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別幅

別幅 物目 際 年月日 朝鮮國王姓 諱⁶⁶⁾

국서 양식과는 달리 외면식을 확인할 수 없다. 외면식이 없는 까닭은 별폭은 국서에 첨부되는 문서이므로 외면에 수·발신자의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별폭은 국서궤에 국서와 함께 封하였다.

조선에서는 직전 사행인 1711년 사행의 별폭 사례대로 1718년 12월 7일 예단 물목을 마련하여 해당 관청에 복정하였다.⁶⁷⁾

65) 약군과 구관백에게 별폭을 증정한 것은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약군에게는 1643년·1682년·1747년·1811년, 구관백에게는 1747년 사행 때 증정되었다.

66) 국서식과 마찬가지로 본문만을 수록하였다(『增正交隣志』 권5, 「別幅」).

67) 『通信使謄錄』 戊戌(1718) 十二月初七日.

<표 7> 1719년 별폭 예물 마련

연번	물목	수량	복정처
1	鷹子	10연	경상도 6연
			강원도 4연
2	駿馬 具鞍	2필	예조
3	虎皮	15장	
4	豹皮	20장	
5	人蔘	50근	
6	大繻子	10필	
7	大緞子	10필	
8	色大紗	20필	
9	白苧布	20필	
10	生苧布	20필	
11	黑麻布	30필	
12	靑黍皮	30장	
13	各色必	50자루	
14	魚皮	100장	
15	色紙	30권	
16	眞墨	50홀	
17	黃蜜	100근	
18	淸蜜 每缸一斗	10기	

그러나 일본에서는 관백이 사냥을 좋아하므로 응자의 수량을 1682년 전례대로 복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이 때문에 응자의 수량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조선에서는 응자의 수량을 1682년 사례대로 마련하는 것은 전례(1711년)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⁶⁸⁾ 따라서 조선은 일본의 뜻을 방색하기 위하여 절목 강정 역관인 한후원을 다시 부산으로 내려 보내어 일본의 뜻을 꺾도록 하였다. 차왜는 1682년 전례를 회복하는 것은 예도의 뜻임을 전하면서 1711년 사행 때 응자 대신 수량을 늘린 표피와 색사의 수량을 다시 줄이겠다고 하였다.

68) 『通信使謄錄』 戊戌(1718) 十二月初一日.

다음은 1655년부터 1719년까지 실제로 증정된 조선 국왕의 별폭 예단이다.

<표 8> 사행별 별폭 예단

연번	사행 물명	1655년	1682년	1711년	1719년
		을미사행 ⁶⁹⁾	임술사행 ⁷⁰⁾	신묘사행 ⁷¹⁾	기해사행
1	응자	20	10	10	20
2	준마	2	2	2	2
3	호피	15	15	15	15
4	표피	20	20	20	20
5	초피		20	20	
6	인삼	50	50	50	50
7	대유자	10	10	10	10
8	대단자	10	10	10	10
9	색대사		20	20	
10	백조포	(백저포)30	20	20	30
11	황조포	30	20	20	30
12	유포	(흑마포)30	30	30	30
13	청서피	30	30	30	30
14	각색필	(황모필)50	50	50	50
15	어피	100	100	100	100
16	색지	30	30	30	30
17	진묵	(유매묵)50	50	50	50
18	황밀	100	100	100	200
19	청밀	10	10	10	10
20	채화석	20			20
21	백면주	50			50

* 괄호 안은 별폭에 기재된 물명이다.

** 음영은 수량 차이가 있는 물목이다.

69)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1655년 국서 별폭 참조(德川幕府朝鮮國王往復書翰のうち李溟書契別幅, 청구기호: B-1768).

70)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1682년 국서 별폭 참조(德川幕府朝鮮國王往復書翰, 청구기호: B-1768).

71) 趙泰億·任守幹, 『東槎日記』 坤, 國書.

1655년 을미사행과 1719년 기해사행의 별폭 물목은 황밀의 수량을 제외하고 일치한다. 『동문회고』에 따르면 1719년 사행의 별폭 예단은 1682년 전례를 따랐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증명된 별폭 예물은 1655년 사행의 사례와 동일하다. 일본은 별폭 예물과 관련하여 일본 관백이 사냥을 좋아하므로 응련을 더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는 1682년 사례를 회복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655년 사례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한후원을 내려 보내 예단 물목에 대하여 다시 교섭하는 과정 중에 일본 측에서는 1655년 전례의 회복이라는 것이라고 바로잡았고, 별폭 수량의 증감은 관백의 뜻을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애초에 직전 사례가 아닌 전전 사례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새로운 규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 구례를 회복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별다른 거부 없이 일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⁷²⁾

조선과 일본의 통신사행 절차와 예물 마련 등의 교섭 과정에서 일본은 사례의 변통을 번번이 요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조선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요구한 사안이 이전에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 대체로 거부감 없이 수긍하였다.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에는 거부감을 내비치며 적극적으로 방색하였다. 만약 일본 측에서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에도 또는 대마도에서 보내오는 증빙 문서를 요구한 다음에야 수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한 1719년 별폭 예단은 다음과 같다. 원문은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1719년 별폭을 정서한 것이다.

① 別幅

② 人蔘伍拾觔

72) 『通信使謄錄』 己亥(1719) 三月二十七日.

- ③ 大襦子拾疋
- ④ 大緞子拾疋
- ⑤ 白照布參拾疋
- ⑥ 黃照布參拾疋
- ⑦ 白綿紬伍拾疋
- ⑧ 黑麻布參拾疋
- ⑨ 虎皮拾伍張
- ⑩ 豹皮貳拾張
- ⑪ 彩花席貳拾張
- ⑫ 青黍皮參拾張
- ⑬ 魚皮壹百張
- ⑭ 色紙參拾卷
- ⑮ 各色筆伍拾柄
- ⑯ 眞墨伍拾笏
- ⑰ 黃蜜壹百觔
- ⑱ 清蜜壹拾器[每缸壹斗]
- ⑲ 鷹子貳拾連
- ⑳ 駿馬貳疋[鞍具]
- ㉑ 際
- ㉒ 己亥年四月 日
- ㉓ 朝鮮國王李 焯

[印: 爲政以德]

총 23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의 서두에는 별폭이라는 문서명을 기재하였다. 한 행에 하나의 물종과 수량을 기재하였으며 물목 기재가 끝난 다음 ‘際’字를 적어 물목이 끝났음을 표시하였다. 모두 『증정교린지』의 별폭 양식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물의 물목은 총 19종이다. 별폭의 발신자로 ‘조선국왕이돈’을 기재한 후 인장을 답인하였다.

별폭에 사용한 인장의 인문은 국서와 마찬가지로 ‘위정이덕’이다.

국서 별폭과 각종 문헌에 남아있는 예단 물목의 수량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현전하는 1719년 사행 기록에 별폭의 물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 그 수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1719년 별폭 물종별 수량

연번	물종(단위)	수량				
		1719년 별폭 원본	『동문회고』	『해유록』	『조선인왕 복서간』	『통신사등록』
1	인삼(근)	50	50	50	50	50
2	대유자(필)	10	10	10	10	10 ⁷³⁾
3	대단자(필)	10	10	10	10	10
4	백조포(필)	30	20 ⁷⁴⁾	30	30	20 ⁷⁵⁾
5	황조포(필)	30	20 ⁷⁶⁾	30	30	20 ⁷⁷⁾
6	백면주(필)	50	-	50	50	-
7	후마포(필)	30	30	30	30	30
8	호피(장)	15	15	15	15	15
9	표피(장)	20	20	20	20	20
10	채화석(장)	20	-	20	20 ⁷⁸⁾	-
11	청서피(장)	30	30	30	30	30
12	어피(장)	100	100	100	100	100
13	색지(권)	30	30	30	30	30
14	각색필(병)	50	50	50	50	50
15	진묵(홀)	50	50	50	50	50
16	황밀(근)	100	100	100	200	100
17	청밀(기), 매 항 1두	10	10	10	10	10
18	응자(연)	20	10	20	20	10
19	준마(필), 안장 갖춤	2	2	2	2	2
20	색대사	-	20	-	-	20

73) 大繻子로 표기함.

『통문관지』에는 1711년 통신사 때 백면주 50필, 채화석 20장, 황저포 10필, 백저포 10필, 응자 10연을 감제하고 대신 色大絲 20필을 보냈다고 하였다.⁷⁹⁾ 『통문관지』의 내용에 따르면 『동문회고』와 『통신사등록』의 기록은 1711년 신묘사행의 별폭 수량에 준하여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문회고』와 『통신사등록』의 기록은 별폭 예단에 대한 교섭이 마무리되기 전에 마련된 문서를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유록』의 경우 예단이 모두 완비된 이후에 별폭의 내용을 베껴 적은 후 국서와 함께 통신사가 지참하고 도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작성된 『조선인왕복서간』은 아마도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국서. 별폭의 謄本을 요구한 후 그대로 베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 작성한 기록과 일본에서 작성된 기록이 차이를 보이며, 일본에서 작성한 기록이 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밀의 경우 별폭에는 壹百觔이지만 『조선인왕복서간』에는 二百觔으로 되어 있다. 이는 베껴 적을 때 발생한 오류로 추정된다.

다음은 일본 관백이 조선의 국왕에 보내 온 회례 물목이다. 관백의 회답국서 별폭은 동경국립박물관에 사본이 소장되어 있고 『동문회고』·『조선인왕복서간』에도 수록되어 있다.⁸⁰⁾ 관백의 회답국서와 마찬가지로 동경국립박물관 소장된 사본을 바탕으로 정서하였다.

74) 白苧布로 표기함.

75) 白苧布로 표기함.

76) 生苧布로 표기함.

77) 生苧布로 표기함.

78) 龍花席으로 표기함. 필사자가 彩를 龍으로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79)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國書式.

80) 『通信使謄錄』에는 관백의 회답 서계는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고 하며 그 원문을 기록해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록은 직전 사행인 1711년 신묘사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通信使謄錄』 壬辰(1712)三月初九日 ; 『通信使謄錄』 庚子(1720) 正月二十五日).

- ① 別幅
 - ② 六摺畫屏風貳拾雙
 - ③ 鎚金案貳張
 - ④ 鎚金鞍具貳拾副
 - ⑤ 染華綾壹百端
 - ⑥ 綵紬貳百端
 - ⑦ 整
 - ⑧ 享保四年己亥十月 日
 - ⑨ 日本國源 宗吉
- [印: 源]⁸¹⁾

일본 관백이 조선 국왕 앞으로 보내온 회례 물품은 六摺畫屏風, 鎚金案, 鎚金鞍具, 染華綾, 綵紬의 총 5종이다. 회례 별폭에 수록된 물품은 일본에 전하는 『實記』에 수록된 물명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 12> 1719년 회례별폭의 일본 기록

연번	1719년 회례 별폭	『實記』 ⁸²⁾
1	六摺畫屏風貳拾雙	屏風二十双
2	鎚金案貳張	梨地蒔繪の大卓二脚
3	鎚金鞍具貳拾副	馬具二十副
4	染華綾壹百端	染繪百端
5	綵紬貳百端	亂茶苧百端·色茶苧百端

『實記』의 기록이 실제 별폭의 물품 명칭과 다른 까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81) 별폭 사본에는 인장의 답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별폭 양식에 따르면 작성자의 이름자 위에 인장이 답인되므로 인장을 표기하였다.

82) Seigle, Cecilia S, 「徳川將軍と贈物」, ScholarlyCommons, 2016, 재인용.

통신사를 요청하러 온 대마도의 차왜는 조선이 가져갈 예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을 요구하지만 조선 측에서 회례 물품에 대하여 요청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통신사등록』만을 참고하더라도 조선은 통신사 파견은 물론 파견과 관련한 여러 절차와 규정에 있어서 일본 측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 적극적인 요구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 통신사행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 통신사 파견과 사행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요시무네[吉宗]의 관백 지위 승습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된 1719년 통신사행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 당시 조선 국왕과 일본 관백이 주고받은 국서를 검토하였다.

1719년 통신사행은 관백의 급사와 새로운 관백의 지위 승습으로 인하여 실시되었다. 조선에서의 사신 파견 준비는 일본에서 파견한 고부차왜와 고정차왜, 그리고 통신사청래차왜의 도착으로 시작된다. 일본의 차왜 파견은 1711년 의례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통신 삼사로 선발된 이는 정사 홍치중, 부사 황선, 종사관 이명언이며 일본으로 도해한 사행 인원을 약 480인이다. 그리고 통신사 파견을 위한 절목 강정 역관으로는 한후원을 차출하였다. 이전의 사행과는 달리 조선에서도 통신사행 절목을 마련하여 한후원 편에 부쳤으며, 최종적으로 조선과 일본이 강정한 절목은 총 34조목이었다. 일본과의 교섭과는 별개로 조선에서는 응행제사라고 하는 통신사 시행 규정과 사행 원역의 범죄 행위를 검속하기 위한 금단절목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출발 일

자에 맞추어 출발·승선 일자를 정하였고 사신과 원역을 구성하였다. 사신 일행은 4월 11일 서울에서 하직한 후 5월 18일 부산에서 승선하였다.

동경국립박물관에는 1719년 조선 국왕의 국서·별폭 원본과 관백의 회답국서·회례별폭 寫本이 소장되어 있다. 1719년 국서와 별폭은 『증정교린지』 국서·별폭식과 일치한다. 그리고 1711년 國王殿下로 변경한 일본 관백의 대호를 1682년의 大君殿下 사례로 복구하였다. 조선과 일본에 전하고 있는 여러 문헌 사료에는 양국의 국서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동문휘고』와 『통신사등록』 외의 문헌에 수록된 조선 국왕의 국서는 통신사가 지참한 국서 등본을 등사한 것이며, 일본 관백의 국서는 통신사가 미리 실물을 확인 후 베낀 것으로 추정된다. 별폭은 국서에 첨부되는 문서로, 국서와 함께 증정하는 예물의 물목을 수록한 것이다. 1719년 사행 때 일본 측에서는 1655년 사행의 별폭 예단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몇 차례 논쟁이 있었으나 조선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본고는 1719년 사행의 준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과 일본의 교섭과 조선에서의 사행 준비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국서와 국서에 첨부되는 별폭의 양식과 실체를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9차례 사행 가운데 1719년 사행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1711년 사행에 적용되었던 일본의 의례개혁이 폐기되면서 1682년 사례를 1719년 사행에 적용하기 위한 일본의 요청과 그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日光山 致祭儀를 폐기하는 등 일부 사항은 1711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신사행을 통하여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는 국서 외에도 예조와 막부 관료가 주고받은 서계, 그리고 통신사의 사예단 단자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국서 외의 외교문서를 다루지 못하였지만 후속 연구를 통하여 외교문서의 실체를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通信使謄錄』, 『通文館志』, 『增正交隣志』, 『春官志』, 『變例集要』, 『同文彙考』, 『海遊錄』, 『東槎日記』, 『朝鮮人往復書簡』

2. 번역서

정경주·유영옥 역, 『국역통신사등록 IV』,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6.

하우봉·홍성덕 역, 『(국역)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7.

3. 논문

김경태, 「임진왜란 후 강화교섭기 국서문제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36, 2009.

김덕진 외, 「외교와 경제 : 조선 후기 통신사외교와 경제시스템」,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민덕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606년 조선에 보낸 ‘국서’에 대한 위조설 검토 -요 네타니說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손승철,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

_____,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손승철 외, 『近世韓日外交秘史-國書改作과 韓日外交의 심층 분석』, 강원대학교출판부, 1988.

심민정, 「조선 후기 통신사 원역의 선발실태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3, 2005.

_____, 『조선 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6, 2015.

_____, 「朝鮮後期 通信使行 관련 差倭 接待」, 『조선통신사연구』 24, 2017.

유재춘, 「朝鮮後期 朝 日國書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1, 1993.

이재훈, 「기해사행(1719) 속 전례의 활용-대마(對馬) 종가문서(宗家文書)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25, 2019.

이효원·하지영, 「1719년 통신사행과 일본 문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고전연구』 38, 2017.

-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 임영현, 『조선 후기 通信使行 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정성일, 「朝·日間 公貿易: 書契別幅(1614-99)의 分析」, 『사학연구』 58-59, 1999.
- _____, 「通信使船 船員의 船上生活과 治療」,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 _____, 「國書와 書契로 본 朝鮮後期(1600~1870) 對日外交」, 『명칭사연구』 52집, 명칭사학회, 2019.
- 하우봉, 「『通信使謄錄』의 史料的 性格」, 『한국문화』 12, 1991.
- _____, 「조선시대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 한태문, 「申維翰의 『海游錄』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6, 2008.
-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32, 2009.

古川祐貴, 「徳川將軍の外交印——朝鮮國王宛て國書・別幅から」, 『國書からむすぶ外交』, 東京大學出版會, 2019.

Seigle, Cecilia S, 「徳川將軍と贈物」, ScholarlyCommons(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6.

4. 웹사이트

東京國立博物館(<https://webarchives.tnm.jp/imgsearch/index>)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p>투고일 : 2019. 11. 11. 심사완료일 : 2019. 12. 07. 게재확정일 : 2019. 12. 19.</p>
--

| Abstract |

The Precedent of the 9th Tongsinsa and National
Diplomatic Papers in 1719

Im, Young-Hyeon

This study examined the dispatch process of delegations and the credentials exchanged between Joseon Dynasty and Japan in 1719.

The process of negotiation between Joseon and Japan for the visit in 1719 and the preparation process in Joseon were studied in time series. Next, the form system and practice of the addendums of credentials exchanged between Joseon and Japan were examined. I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itinerary of delegations and exchanges in Japan, this study focused more on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negotiation in Joseon. Resultingly, it was found that the visit in 1719 was a return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visit 1682 but it also applied some of the newly introduced cases during the visit in 1711. Moreover, even if the form of the credentials and addendums in 1719 was followed, there were changes in the type and quantity of the articles of addendums prepared for a present upon request by Japan.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the reason that the credentials could be included in the literature written privately was because the delegations brought the copies of the credentials of the King of Joseon and they could receive and read the letter of reply from the Japanese authorities in advance.

Key words: Tongshinsa(通信使), Gihae embassy visit(己亥使行), National Diplomatic Papers(國書), Addendum(別幅)